

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

[] 승인

[] 변경승인

신청서

※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8쪽 중 1쪽)

접수번호				접수일			
구분	[] 승인					[] 변경승인	
복합 지구명				복합사업 유형			
① 공공 주택 사업자	상 호			등록번호			
	대표자			법인등록번호			
	영업소 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
② 설계자	성 명	(서명 또는 인)		자격번호			
	사무소명			등록번호			
	사무소 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
③ 시공자	상 호			등록번호			
	대표자	(서명 또는 인)		법인등록번호 (생년월일)			
	영업소 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
④ 대지 조건	대지 위치						
	지번	지목	대지 면적	최저 대지폭	최고 대지폭	등기 명의자	
			m ²	m	m		
			m ²	m	m		
			m ²	m	m		
	용도지역		용도지구		용도구역		
	대지 현황						
	주변 현황						
사업계획 개요(※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.)							
대지면적(m ²)				건축면적(m ²)			
건폐율(%)				연면적(m ²)			
용적률 산정용 연면적(m ²)				용적률(%)			
⑤ 건축물 명칭		주 건축물 수		동	부속 건축물	동, m ²	
⑥ 주 용도		⑦ 주택 형태		총 세대수		세대	
총 주차대수		대	착공 예정일	사용검사 예정일			

⑧ 부대시설	시설 종류	설치 현황		단지 내 현황	단지 외 현황
※ 전기, 도로, 상하수도, 통신설비, 개별난방 또는 중앙(지역)난방, 주차장, 조경시설, 관리사무소, 보안등, TV공청시설, 비상급수시설,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					
⑨ 복리시설 분양시설	시설 종류	주 용도	면적(㎡)	개수	그 밖의 현황
※ 어린이놀이터, 운동장, 주민운동시설, 경로당, 보육시설, 문고, 유치원, 근린생활시설,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					
⑩ 오수정화시설		형식		용량	(인용)
주차장	구분	옥내	옥외	인근	면제
	자주식	대, ㎡	대, ㎡	대, ㎡	대
	기계식	대, ㎡	대, ㎡	대, ㎡	
변경사항 ※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적되,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.					
일괄처리 사항					
※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8제3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					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8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([]승인 []변경승인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주체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1. 동별 개요

주/부속 구분	☐ 주 건축물 ☐ 부속 건축물			
⑪ 동 명칭 및 번호				
주 용도				
주택 유형별 세대수	☐ 공공분양주택 (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제외)	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	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	☐ 공공임대주택
	세대	세대	세대	세대
주 구조				
지붕				
건축면적(㎡)				
연면적(㎡)				
지하면적(㎡)				
용적률 산정용 연면적(㎡)				
층수	지하:	층, 지상:	층	
높이(m)				
승강기	승용 승강기:	대, 비상용 승강기:	대	
층높이				
반자 높이				
계단 유효폭				
복도 너비				
외벽 두께				
인접 세대와의 벽의 두께				

II. 층별 개요

[illegible]

[illegible]

IV. 사업비/자금계획

구분 []	사업비(천원)		자금계획(천원)	
	대지비		사업주체 자금	
	주택건축비		주택도시기금	
	부대·복리시설 설치비		금융기관 자금	
	간선시설 설치비		그 밖의 자금	
	소계			
	일반분양비			
	사업비 합계		자금계획 합계	
구분 []	사업비(천원)		자금계획(천원)	
	대지비		사업주체 자금	
	주택건축비		주택도시기금	
	부대·복리시설 설치비		금융기관 자금	
	간선시설 설치비		그 밖의 자금	
	소계			
	일반분양비			
	사업비 합계		자금계획 합계	
구분 []	사업비(천원)		자금계획(천원)	
	대지비		사업주체 자금	
	주택건축비		주택도시기금	
	부대·복리시설 설치비		금융기관 자금	
	간선시설 설치비		그 밖의 자금	
	소계			
	일반분양비			
	사업비 합계		자금계획 합계	
변경사유	※ 사업비/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			

※ 구분[]은 주택 유형별로 작성하되, 주택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·상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첨부서류

첨부서류

1. 복합지구의 위치도
2. 토지이용계획
3.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
4.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
5. 법 제40조의8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(주차장·운동장은 제외합니다)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
7.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
8.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,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
9.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
10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·군수·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(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

승인안내

제출하는 곳	시·도	처리부서	공공주택 담당 부서
수수료	없음	처리기간	60일

근거법령

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8
2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35조의5
3.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1조의3

작성방법

- ①·②·③: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○○○ 외 ○명으로 적고, "○○○ 외 ○명"의 현황을 제출합니다.
- ④: 필지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.
- ⑤: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(예: 쌍둥이빌딩, ○○아파트).
- ⑥: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 용도 하나만 적습니다("주상복합"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).
- ⑦: 단독주택·다가주택·다세대주택·연립주택·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⑧·⑨: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.
- ⑩: 여러 형식이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되, 그 밖의 오수정화시설의 형식을 따로 적으며 용량은 대표 형식과 그 밖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.
- ⑪: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(예: 101동, A동, 가동 등).
- ⑫ ~ ⑮: 각 층별 구조, 용도 및 바닥면적을 적습니다.

예) 지하 1층(부설 주차장) 지상 20층인 공동주택으로서 각 층의 바닥면적이 850.27㎡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경우

- 구조: 철근콘크리트, - 용도: 아파트, - 각 층 바닥면적: 850.27㎡

층 구분	구조	용도	바닥면적(㎡)
-1	철근콘크리트	아파트(주차장)	850.27
1	철근콘크리트	아파트	850.27
2	철근콘크리트	아파트	850.27
...	...	...	...
옥탑	철근콘크리트	아파트(물탱크실)	20.45

⑯: 85㎡ A형, 112㎡ B형 등 면적과 형태를 적습니다.

⑰: 복층인 경우에는 "복층"으로 적습니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